

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. 2. 2 선고 2022가단630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2. 2.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2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1. 12. 8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21. 12. 9. 접수 제11252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 중 1/2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/5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2005. 7. 1. 체결된
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21. 8. 12. 접수

제79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3. 소 각하 부분

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5. 4. 28. 선고 2004다71201 판결 등 참조).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은 원고의 주장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사해행위일이 2005. 7. 21.이어서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(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)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.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한다.

판사 송인석

별지